

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

제 정 : 2003. 10. 1.

개 정 : 2018. 9. 5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금강대학교(이하 ‘대학교’라 한다.)내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 대학에 설치된 모든 위원회에 적용된다.

제3조(설치)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4조(구성)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기능 중 세부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규정에 의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5조(임명·임기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③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6조(위원장의 임무)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제7조(소집·의결)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총장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1.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·반복적 안건이거나 경미한 안건
2. 소관위원회 등을 거쳐 심의·의결하고 이를 재차 심의·의결해야 하는 경우
3.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

제8조(간사·서기)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

② 간사는 해당 위원회에서 책임자로 정한다.

제9조(해산) ① 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기한부로 설치된 위원회가 그 활동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허가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기한 도래 시에 자동 해산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서면결의 사항은 이 규정 제7조 ③항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